|  |  |  |
| --- | --- | --- |
| **《식품안전 정보공포 관리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  衛監督發[2010] 제9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위생보건청(국), 농업(농목, 축목, 수의, 농토개간, 어업)청(국), 공상국, 품질기술감독국, 출입국검사검역국, 식품약품 감독관리국:  《식품안전법》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하고 식품안전 정보공포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위생보건부는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식품약품 감독관리국과 회동하여 《식품안전 정보공포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위생보건부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0년 11월 3일  **식품안전 정보공포 관리방법**  **제1조** 식품안전 정보공포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식품안전법》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식품안전정보라 함은 현급 이상 식품안전 종합조율부서, 감독관리부서 및 정부의 기타 유관부서가 그 직책 수행과정에 제작하였거나 알게 된, 일정한 형태의 기록, 보존한 식품 생산, 유통, 요식소비 및 수출입 단계와 관련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식품안전정보는 적시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포하여 소비자와 식품 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식품안전정보는 위생보건 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공포하는 식품안전 정보와 각 관련 감독관리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포하는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일상적 감독관리 정보로 구분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위생보건 행정부서, 농업 행정부서, 품질감독관리 행정부서, 공상 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 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식품안전 정보공포제도를 수립하고 정부사이트, 정부공보, 뉴스브리핑 및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 TV방송 등 공중이 입수하기 편한 방식으로 식품안전 정보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각 지방에서는 점차 통일적인 식품안전 정보공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위생보건부서, 농업 행정부서, 품질 감독부서, 공상 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 및 출입국 검사검역부서에서는 파악한 식품안전정보를 상호 통보해야 한다. 각 유관부서에서는 정보통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정보의 통보형식, 통보루트, 책임부문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보를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직책분공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식품 안전사고 등 긴급정보는 《식품안전법》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아래의 식품안전정보는 국무원 위생보건행정부서에서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공포한다.  (1) 국가 식품안전의 전반 상황. 여기에는 국가 연도 식품안전의 전반 상황, 국가 식품안전 위험감시계획 실시상황, 전국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과 수정 작업상황 등을 포함한다.  (2) 식품안전 위험평가정보.  (3) 식품안전 위험알람정보. 여기에는 식품에 존재하거나 잠재하는 유독, 유해요소 알람정보, 보다 심각한 식품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식품알람정보를 포함한다.  (4)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 정보. 여기에는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지, 책임단위의 기본상황, 사상자 수 및 구급치료 상황, 사고원인, 사고책임 조사상황, 응급처리조치 등을 포함한다.  (5) 기타 중요한 식품안전정보와 국무원에서 통일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  각 유관부서에서는 당 부서에서 파악한 상기 식품안전정보와 관련한 정보를 지체 없이 국무원 위생보건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그 영향이 본 관할지역에 제한 된 하기 식품 안전정보를 책임지고 공포한다.  (1) 식품안전 위험감시방안 실시상황, 지방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과 수정 상황 및 기업표준 비치상황.  (2) 본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기유식품의 안전위험 평가결과의 식품안전 위험요소.  (3) 영향이 본 관할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제한 된 식품안전 위험알람정보. 여기에는 식품에 존재하거나 잠재하는 유독, 유해요소의 알람정보, 위험정도가 비교적 큰 식품안전 위험알람정보 및 관련 감독관리조치와 건의를 포함한다.  (4) 본 지역의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정보.  상기한 정보는 성급 위생보건부서가 스스로 결정해서 공포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위생보건부서, 농업행정부서, 품질 감독부서, 공상 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 감독부서, 상무행정부서, 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일상식품의 안전 감독관리정보가 2개 이상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관부서가 공동으로 공포해야 한다. 각 유관부서에서는 일상 식품안전 감독관리정보의 자문, 조회방법을 사회에 공포하여 공중의 조회에 편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중대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식품 안전사고처리를 책임진 성급 위생보건행정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당지 정부의 지도하에서 사고발생 후 첫 시점에 정보반포방안을 작성하고 위생보건행정부서에서 정보요지를 공포한 다음 즉시 초보적인 상황확인, 대응조치 등을 공포하는 동시에 사태의 진척 및 처리상황에 근거하여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사고와 관련한 요언이나 풍문에 대하여는 신속히 사실을 규명하고 불량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제11조** 각 유관부서에서는 식품안전정보를 공포하기 전에 전문가를 동원하여 정보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식품안전 정보공포 시에는 전문가를 동원하여 식품안전정보 중의 과학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밝히게 하며 식품 안전지식을 널리 홍보하고 보급하여 건전한 생활방식을 창도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정보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유관부서와 협의하는 동시에 협의 상황을 현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감독관리책임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나 통일적으로 공포해야 할 식품안전정보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급 위생보건행정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위생보건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공포해야 할 식품안전정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유관부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13조** 이 방법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의 보고, 통보, 협의 책임을 부담한 유관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즉시에 식품안전정보를 보고, 통보, 협의해야 하며 은닉하거나 허위보고를 올리거나 보고를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지방 각급 위생보건행정부서와 유관부서의 상급 주관부서에서는 식품안전 정보공포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각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 식품 안전정보의 공포, 보고, 통보 상황을 부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필요시에 유관부서에서는 하급부서가 반포한 식품안정정보를 시정하는 동시에 관련 식품안전정보를 다시 발표할 수 있다.  **제15조** 각 지방과 각 부서에서는 신문매체의 정보전파역할과 언론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신문매체의 식품안전정보 보도를 적극 지원하며 신문매체의 정보교류루트를 원활하게 하고 그들의 취재와 보도에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지 정보를 봉쇄하거나 언론감독을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중대한 식품 안전문제는 제일시점에 권위부문을 통하여 신문매체에 공포하고 적당한 시점에 사건의 진척상황과 처리결과를 보도하는 동시에 후속 상황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신문매체에서 반영한 식품안전 문제를 지체 없이 조사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적당한 방식으로 보도해야 하며 실정을 즉시 규명해야 한다.  **제16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유관부서에 관련 상황을 자문하고 알아볼 권리가 있으며 식품안전정보 관리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정부나 유관부서의 위임을 받지 않고는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17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공포한 식품 안전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 안전정보를 공포한 부서가 이의대상 정보를 확인 처리해야 한다. 확인결과 확실히 부당한 경우에는 원 공포범위에서 시정하고 이의 제기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8조** 식품안정정보를 공포하는 부서는《식품안전 법》에서 규정한 직책에 따라 공포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법을 위반하고 식품 안전정보를 발표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불량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제19조**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는 이 방법에 따라 부서의 식품 안전정보 공포 관리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부서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발표 잠정관리방법》(國食藥監協[2004] 제556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关于印发《食品安全信息公布**  **管理办法》的通知**  卫监督发〔2010〕93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卫生厅（局），农业（农牧、畜牧、兽医、农垦、渔业）厅（局），商务厅（局），工商局，质量技术监督局、出入境检验检疫局，食品药品监管局：  为贯彻实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规范食品安全信息公布行为，卫生部会同农业部、商务部、工商总局、质检总局、食品药品监管局制定了《食品安全信息公布管理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卫生部  　农业部　　　　　　　　　　　　　　　　　　　　　　　　　商务部  工商总局　　　　　　　　　　　　　　　　　　　　　　质检总局  国家食品药品监管局　　　　　　　　　　　　　　　　　　　　　　　　二○一○年十一月三日  **食品安全信息公布管理办法**  **第一条**　为规范食品安全信息公布行为，根据《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食品安全信息，是指县级以上食品安全综合协调部门、监管部门及其他政府相关部门在履行职责过程中制作或获知的，以一定形式记录、保存的食品生产、流通、餐饮消费以及进出口等环节的有关信息。  **第三条**　食品安全信息公布应当准确、及时、客观，维护消费者和食品生产经营者的合法权益。  **第四条**　食品安全信息分为卫生行政部门统一公布的食品安全信息和各有关监督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公布的食品安全日常监督管理的  信息。  **第五条**　县级以上卫生行政、农业行政、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食品药品监管以及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建立食品安全信息公布制度，通过政府网站、政府公报、新闻发布会以及报刊、广播、电视等便于公众知晓的方式向社会公布食品安全信息。各地应当逐步建立统一的食品安全信息公布平台，实现信息共享。  **第六条**　县级以上卫生行政、农业行政、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食品药品监督管理、商务行政以及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相互通报获知的食品安全信息。各有关部门应当建立信息通报的工作机制，明确信息通报的形式、通报渠道和责任部门。接到信息通报的部门应当及时对食品安全信息依据职责分工进行处理。对食品安全事故等紧急信息应当按照《食品安全法》有关规定立即进行处理。  **第七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负责统一公布以下食品安全信息：  　　（一）国家食品安全总体情况。包括国家年度食品安全总体状况、国家食品安全风险监测计划实施情况、食品安全国家标准的制订和修订工作情况等。  　　（二）食品安全风险评估信息。  　　（三）食品安全风险警示信息。包括对食品存在或潜在的有毒有害因素进行预警的信息；具有较高程度食品安全风险食品的风险警示信息。  　　（四）重大食品安全事故及其处理信息。包括重大食品安全事故的发生地和责任单位基本情况、伤亡人员数量及救治情况、事故原因、事故责任调查情况、应急处置措施等。  　　（五）其他重要的食品安全信息和国务院确定的需要统一公布的信息。  　　各相关部门应当向国务院卫生行政部门及时提供获知的涉及上述食品安全信息的相关信息。  **第八条**　省级卫生行政部门负责公布影响仅限于本辖区的以下食品安全信息：  　　（一）食品安全风险监测方案实施情况、食品安全地方标准制订、修订情况和企业标准备案情况等。  　　（二）本地区首次出现的，已有食品安全风险评估结果的食品安全风险因素。  　　（三）影响仅限于本辖区全部或者部分的食品安全风险警示信息，包括对食品存在或潜在的有毒有害因素进行预警的信息；具有较高程度食品安全风险食品的风险警示信息及相应的监管措施和有关建议。  　　（四）本地区重大食品安全事故及其处理信息。  　　上述信息由省级卫生行政部门自行决定并公布。  **第九条**　县级以上卫生行政、农业行政、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食品药品监管、商务行政以及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依法公布相关信息。日常食品安全监督管理信息涉及两个以上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职责的，由相关部门联合公布。各有关部门应当向社会公布日常食品安全监督管理信息的咨询、查询方式，为公众查阅提供便利，不得收取任何费用。  **第十条**　发生重大食品安全事故后，负责食品安全事故处置的省级卫生行政部门会同有关部门，在当地政府统一领导下，在事故发生后第一时间拟定信息发布方案，由卫生行政部门公布简要信息，随后公布初步核实情况、应对和处置措施等，并根据事态发展和处置情况滚动公布相关信息。对涉及事故的各种谣言、传言，应当迅速公开澄清事实，消除不良影响。  **第十一条**　各相关部门在公布食品安全信息前，可以组织专家对信息内容进行研究和分析，提供科学意见和建议。在公布食品安全信息时，应当组织专家解释和澄清食品安全信息中的科学问题，加强食品安全知识的宣传、普及，倡导健康生活方式，增强消费者食品安全意识和自我保护能力。  **第十二条**　县级以上食品安全各监督管理部门公布食品安全信息，应当及时通报各相关部门，必要时应当与相关部门进行会商，同时将会商情况报告当地政府。各食品安全监管部门对于获知涉及其监管职责，但无法判定是否属于应当统一公布的食品安全信息的，可以通报同级卫生行政部门；卫生行政部门认为不属于统一公布的食品安全信息的，应当书面反馈相关部门。  **第十三条**　依照本办法负有食品安全信息报告、通报、会商职责的有关部门，应当依法及时报告、通报和会商食品安全信息，不得隐瞒、谎报、缓报。  **第十四条**　地方各级卫生行政部门和有关部门的上级主管部门应当组织食品安全信息公布情况的监督检查，不定期对食品安全监管各部门的食品安全信息公布、报告和通报情况进行考核和评议。必要时有关部门可以纠正下级部门发布的食品安全信息，并重新发布有关食品安全信息。  **第十五条**　各地、各部门要充分发挥新闻媒体信息传播和舆论监督作用，积极支持新闻媒体开展食品安全信息报道，畅通与新闻媒体信息交流渠道，为采访报道提供相关便利，不得封锁消息、干涉舆论监督。对重大食品安全问题要在第一时间通过权威部门向新闻媒体公布，并适时通报事件进展情况及处理结果，同时注意做好舆情收集和分析。对于新闻媒体反映的食品安全问题，要及时调查处理，并通过适当方式公开处理结果，对不实和错误报道，要及时予以澄清。  **第十六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有关部门咨询和了解有关情况，对食品安全信息管理工作提出意见和建议。  　　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政府或有关部门授权，不得发布食品安全信息。  **第十七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公布的食品安全信息持有异议的，公布食品安全信息的部门应当对异议信息予以核实处理。经核实确属不当的，应当在原公布范围内予以更正，并告知持有异议者。  **第十八条**　公布食品安全信息的部门应当根据《食品安全法》规定的职责对公布的信息承担责任。任何单位或个人违法发布食品安全信息，应当立即整改，消除不良影响。  **第十九条**　国务院有关食品安全监管部门应当根据本办法制订本部门的食品安全信息公布管理制度。  **第二十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等部门联合印发的《食品安全监管信息发布暂行管理办法》（国食药监协〔2004〕556号）同时废止。 |